

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 참석 및 관련 부속행사 참석

- 한기주 선임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I. 출장 개요

가. 1. 출장 목적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 총회(COP17)에 참석하여 기후변화협약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 수집
 - 정부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동향 파악
 - 각국 정부 및 NGO, 국제기구 등에서 배포하는 자료들을 수집
- 부속행사(Side event) 참여
 - 부속행사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국제기구 등 각 계에서 각 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나. 2. 주요 일정

다.

라. * 대한상의회가 주관하는 산업계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

일 자	주 요 내 용	장 소
12/3(토)	·출국	한국(인천) → 홍콩 → 요하네스버그 → 남아공 더반
12/4(일)	·더반 도착	
12/5(월)	·COP17 등록 및 Exhibition 참관	더반 회의장(ICC)
12/6(화)	·COP17/ Side Events 참가	
12/7(수)	·COP17/ Side Events 참가 ·환경부-산업계 간담회 ·지경부-산업계 간담회	더반 회의장(ICC) 다루마 The New Cafe Fish
12/8(목)	·외통부-산업계 간담회 ·COP17/ Side Events 참가	Havana Grill 더반 회의장(ICC)
12/9(금)	·COP17/ Side Events 참가	더반 회의장(ICC)
12/10(토) - 11(일)	·귀국	남아공 더반 → 요하네스버그 → 홍콩 → 한국(인천)

마. 3. 회의개요

1) 기간 및 장소

- 2011. 11. 28~12. 9(고위급 회의 : 12.6~11) /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 금번 회의는 당초 12.9(금)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합의도출에 시간이 소요되어 12.11(일) 새벽에 폐막

2) 참석 규모

- 당사국 정부대표(193개국 9천여 명), 국제기구(93개 기구, 1천여 명), NGO(594개 단체 5천여 명) 등 1만 5천여 명 참가(사무국 등

록기준)

- 고위급회의기간 중 유엔사무총장, 7개국 정상(남아공, 모나코, 나우루, 아프리카 국가 등), 140여 명 장관급 인사 참석
- 정부 대표단 등 국내 참가자
 - 정부: 환경부장관(수석대표),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기상청, 산림청, 국회 등
 - 민간: 산업계(대한상의), 대학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그린스타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언론사(연합뉴스, YTN, 전자신문, 내일신문, 불교방송) 등

3) 주요 의제

- Post-2012 기후체제 및 공유비전, 감축(선진국 감축, 개도국 감축), 적응, 재정, 기술지원, 산림악화 방지 등

4) 회의 구성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와 함께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7), 부속기구회의(SBSTA35, SBI35), 협약 및 의정서 특별작업반회의(AWG- LCA 14, AWG-KP 16) 등 6개 회의 병행 개최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 및 주요 쟁점>

I. Post-Kyoto 협상 체제

- Post-Kyoto 협상이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의 종료 시점인 2012년이 가까워 오며 따라 새로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13)에서 Post-Kyoto 협상 프로세스를 정한 발리로드맵을 채택
 - 2009년 말 코펜하겐 총회(COP 15)까지 협상을 완료
 - 협상 방식은 Two-track으로 진행
 - AWG-KP(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의 선진국 감축 문제 논의(2005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OP 11에서 창설이 결정된 특별 작업반(한시적으로 존재))
 - AWG-LCA(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상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2007년 COP 13에서 채택된 발리 행동계획에 의해 창설)

II. 코펜하겐 총회(COP15, 2009년, 발리로드맵 협상 종료 시한)

- Post-Kyoto 체제 합의에 실패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 충돌
 - 총회 결정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참여국에 한정)
- 코펜하겐 합의문 주요 내용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최대 2℃ 이내로 억제
 - 2020년까지 국가별 감축목표와 행동계획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제출
 -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합의(녹색기후기금 설립)

III. 칸쿤 총회(COP16, 2010년)

- 칸쿤 합의문 도출
 - 선진국 의도대로 코펜하겐 합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 와서 결정문으로 공식화함.
 - 3년 만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합의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채택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으나, 핵심 요소인 감축목표 결정은 뒤로 미루어짐으로써 절반의 성공에 그침.
- 칸쿤 합의문 주요 내용
 - ① 교토의정서
 - 1차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 메커니즘 유지

② 공유 비전

- 2°C 온도 상승 억제 등

③ 재정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 등

④ 선진국 감축

-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IPCC 권고 사항) 감축하도록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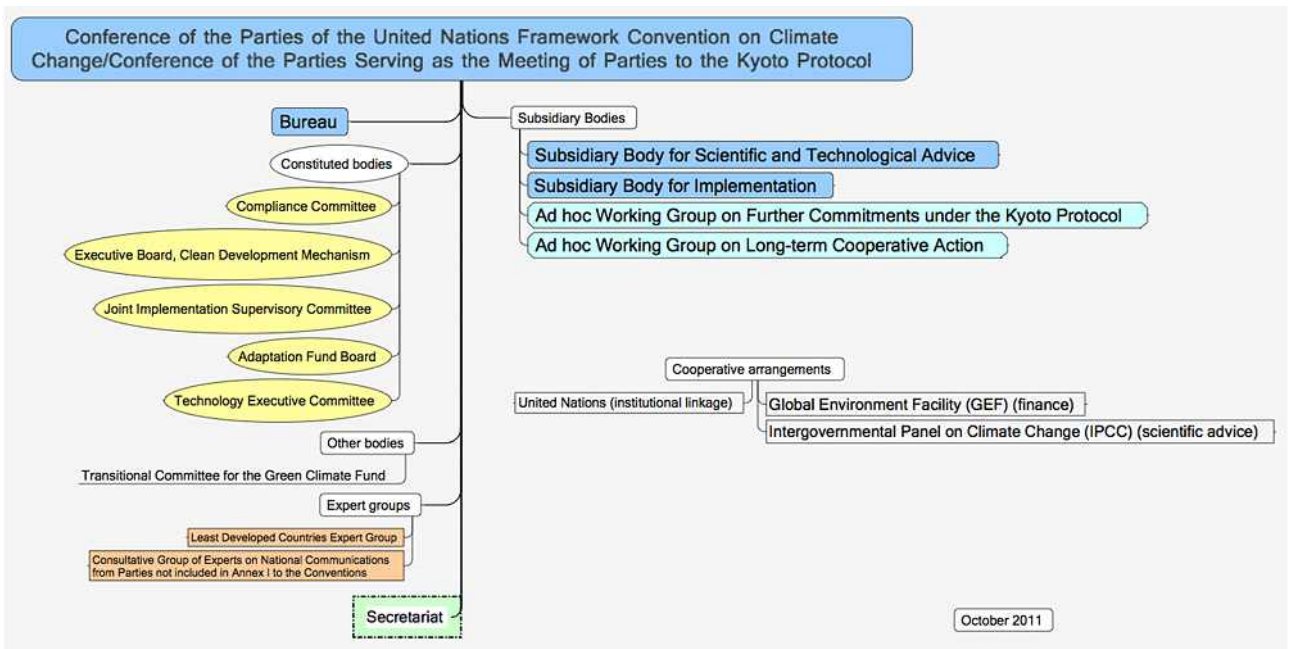
- 각국의 감축 목표 제시

⑤ 개도국 감축

- 2020년까지 BAU 대비 NAMA 실시

*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NAMA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추진하는 정책 및 활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평성 및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에 따라 개도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활동을 취할 수 있다는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음(2007년 발리행동계획에 처음 사용됨)(반면, 선진국은 측정, 보고 및 입증 가능한 저감 목표 및 행동을 설정하여야 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및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OP-MOP) 조직도>



Ⅲ. 더반 총회의 주요 협상 결과

- ◆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연장과 2020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기후 변화체제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반 결과물'(Durban Outcome)'을 결정문으로 채택

바.

사. 1. 더반 결과물 주요 내용

① 교토의정서 연장 및 2020년 이후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 (교토의정서 체제)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2013년 이후에도 연장하여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설정
 -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를 통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2차 공약기간은 5년 또는 8년 중 어느 것을 정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2차 공약기간에 참여하는 선진국의 감축목표도 확정되지 않아 교토의정서 체제의 완전한 연장에는 실패하였음.
 - 교토의정서 참가 선진국은 2012년 5월까지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캐나다는 교토의정서 체제 자체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체제에는 남아 있되 2차 공약기간 동안의 감축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방침을 선언
 - 캐나다의 이러한 결정은 교토의정서 상의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1차공약 기간 평균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6% 감축)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축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음

- * 1차공약 기간의 감축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미감축량의 1.3배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2차공약 기간 중 추가로 감축해야 하고 감축이행 행동계획서를 UNFCCC에 제출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의한 배출권(AAUs)을 해외에 판매할 수 없는 제재조치가 부여됨.
- * 교토의정서 체제에 남아 있으면서 이러한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미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은 개략 140억 달러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일본은 자국에서 교토의정서가 제정되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대단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토의정서 체제에 남아 있었으나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
- * 또한 중국, 미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만 감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 러시아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국이 참여하지 않는 체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



<그림> COP17 총회

- (새로운 법적 체제)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에 합의(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원문은 부록 참조)
 - 지구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1.5~2.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함.
 - 이 목표는 코펜하겐(COP13)과 칸쿤(COP15)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새로운 기후체제를 창설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에 협상을 시작하여 늦어도 2015년 말에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COP21)까지 완료
 - 단일 기후체제의 법적형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함

- * 법적 형태: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또는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 이러한 체제 설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EU와 기후변화의 피해가 큰 군소도서국은 법적 구속력이 비교적 명확한 의정서 또는 법적 문서를 주장
- 반면, 인도 등 일부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체제를 주장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 여지가 큼.
- 이러한 작업 수행을 담당할 새로운 특별작업반을 설치(AWG-DP: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②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설립

-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위한 설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어 GCF가 출범
 - 기금 유치신청과 이사국 선정 및 이사회 개최 등에 합의
 - 우리나라와 독일이 GCF 사무국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하였고 멕시코, 스위스, 중국이 비공식 표명
- 우리나라는 2차 이사회의 개최 및 GCF 출범을 위한 초기 운영비의 일부 지원희망 등 유치 후보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 의지를 표명

③ 칸쿤합의 이행 관련

- (개도국 감축) 온실가스 감축 행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을 등록하는 등록부(NAMA registry)의 인정기

능이 합의문에 반영

- *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록: 각 국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감축행동을 비구속적으로 등록(NAMA Registry)하고 그 행동을 이행하였을 때 탄소크레딧을 부여(NAMA Credit)하는 것
- (감축노력의 투명성 강화) 2년 주기 보고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합의, 국가 배출통계 정보의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특히 개도국 감축노력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되었음.
- (적응) 칸쿤 합의를 통해 설립한 적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구체화
- (기술개발 및 이전) 개도국 입장을 반영하여 기술집행위와 기술센터로 구성된 기술메커니즘 설립에 합의
- (산림) 산림악화(REDD)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개도국 지원에 시장 메커니즘 활용 고려
 -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 Forest Degradation): 개도국의 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COP 13에서 채택된 발리행동계획에 포함된 조치로서, 벌채 및 산림훼손을 감축하는 대가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조치
 - * Deforestation은 영구적인 산림 파괴 및 토지의 산림용도 사용 중단을, Forest degradation은 산림 생산능력을 저하시키는 산림지역의 변화를 각각 의미

④ COP 18 유치국 결정 결과

- 제18차 당사국총회(COP 18)는 2012.11.26~12.7 기간 동안 카타르에서 개최하고, 한국은 2012년 하반기에 각료급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

아. 2. 회의 평가

(1)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커다란 입장차이가 여전히 상존
 -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교토의정서의 연장을 반대하고 중국, 인도 등을 감축 의무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 중국, 인도, 볼리비아 등 개도국은 현행 교토의정서를 연장·유지하고 개도국의 감축행동은 자발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
 - 신흥개도국은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국가차원의 감축계획을 강조하였으나 2020년 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제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제시
-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내년 이후 기후체제의 법적 공백은 일단 방지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음.
- 그러나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 중국 등에 이어 기존 참여국인 일본, 캐나다,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상의 2차 감축 의무 부담 거부 또는 의정서 자체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의 실효성이 부족
 - 201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

* 6위 독일, 7위 한국(부록 참조)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까지 비부속서I 국가(non-Annex I)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일단 2020년까지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국내 경제에 새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한편,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보고 등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 결정은 주요 개도국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음.

(2)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 설립

- 일부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상의 장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고 2020년까지 국제정세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견해도 많음

-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감축 차이 여부와 그 크기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 설립에 대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제기
- 환경단체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측은 2020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가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는 감축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2차 공약기간 동안에는 감축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2020년부터 새로운 체제가 설립된다는 것은 현재의 감축의무에 따른 부담을 미래로 미루어 버린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EU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서 경제적 비용이 큰 감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3)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설립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노력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핵심 사안인 재원 조성과 선진국간 기금 배분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더욱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선진국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녹색기후기금 설립 결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4) 칸쿤합의의 이행

-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필요함에 의견을 일치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집행위와 센터 간 역할관계, 기술과 재정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개도국 기술이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NAMA Registry의 인정기능이 합의문에 반영되면서 우리나라의 감축행동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국내 산업은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과 기술 개발을 요구받게 되었음.
- 개도국으로의 기술개발·이전은 국가 간 및 국내 산업과 개도국 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5) COP18 유치 문제

- COP18 개최국이 카타르로 결정된 데 대해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잘 된 것으로 평가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는 명분 이외에 국내 경제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우려
 - 총회를 유치할 경우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
 -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교토에서 개최된 COP3에서 교토의정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산업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6%의 감축 목표를 받아들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부 록>

<부록 1> Durban Platform 원문

Advance unedited version

Draft decision -/CP.17

Establishment of an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Proposal by the Presiden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cognizing that climate change represents an urgent and potentially irreversible threat to human societies and the planet and thus requires to be urgently addressed by all Parties, and acknowledging that the global nature of climate change calls for the widest possible cooperation by all countri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international response, with a view to accelerating the reduction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Noting with grave concern the significant gap between the aggregate effect of Parties' mitigation pledges in terms of global annua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by 2020 and aggregate emission pathways consistent with having a likely chance of holding the increa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below 2 °C or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fulfilling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will require strengthening the multilateral, rules-based regime under the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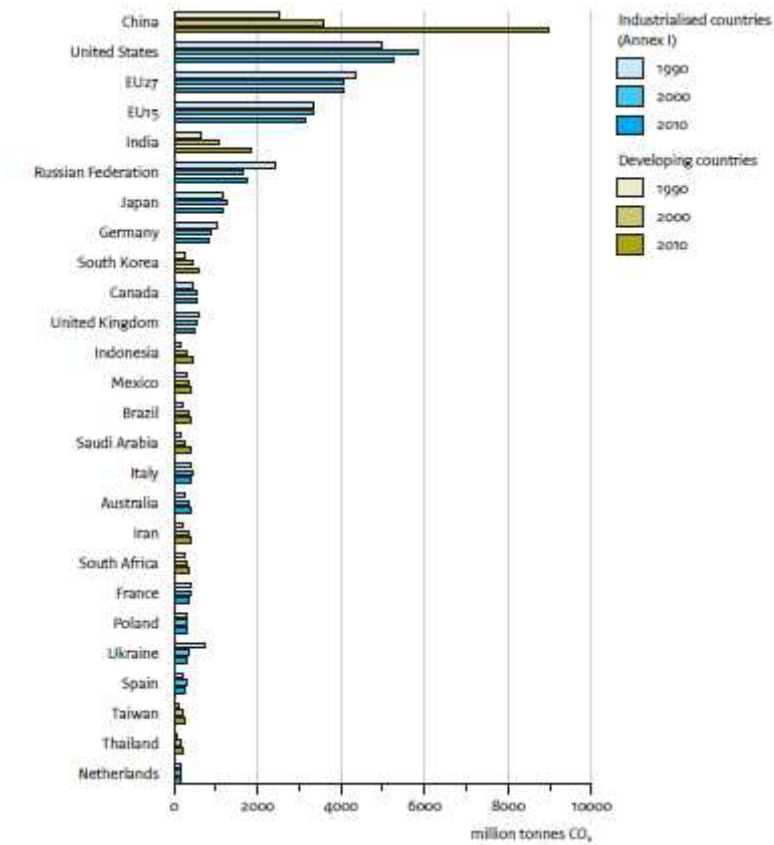
Noting decision X/CMP.7 [Title],

Also noting decision X/CP.17 [Title],

1. *Decides* to extend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for one year in order for it to continue its work and reach the agreed outcome pursuant to decision 1/CP.13 (Bali Action Plan) through decisions adopted by the sixteenth, seventeenth and eighteenth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which time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shall be terminated;

2. *Also decides* to launch a process to develop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through a subsidiary body under the Convention hereby established and to be known as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3. *Further decides* that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shall start its work as a matter of urgency in the first half of 2012 and shall report to future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progress of its work;
4. *Decides* that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shall complete its work as early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2015 in order to adopt this protocol, 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at the twenty-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for it to come into effect and be implemented from 2020;
5. *Also decides* that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shall plan its work in the first half of 2012, including, inter alia, on mitigation, adaptation, financ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transparency of action, and support and capacity-building, drawing upon submissions from Parties and relevant technical, social and economic information and expertise;
6. *Further decides* that the process shall raise the level of ambition and shall be informed, inter alia, by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the outcomes of the 2013-2015 review and the work of the subsidiary bodies;
7. *Decides* to launch a workplan on enhancing mitigation ambition to identify and to explore options for a range of actions that can close the ambition gap with a view to ensuring the highest possible mitigation efforts by all Parties;
8. *Requests* Parties and observer organizations to submit by 28 February 2012 their views on options and ways for further increasing the level of ambition and decides to hold an in-session workshop at the first negotiating session in 2012 to consider options and ways for increasing ambition and possible further ac

<부록 그림 1> 화석연료 사용 및 시멘트 생산에 의한 CO₂ 배출 상위 25개국



자료: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and European Commission JRC, *Long-Term Trend in Global CO₂ Emissions - 2011 report*.

<부록 표 1> 주요국의 CO₂ 배출량(2010)

자료: 부록 그림 1과 동일.

	Emissions 2010	Per capita emissions					Change in CO ₂ , %	Change in population, %
		1990	2000	2010	Change 1990-2010	Change in %		
Annex I *								
United States *	5,250	19,7	20,8	16,9	-2,8	-14%	5%	23%
EU-27	4,050	9,2	8,5	8,1	-1,1	-12%	-7%	6%
EU-15 **	3,150	9,1	8,8	7,9	-1,2	-13%	-5%	9%
- Germany	830	12,9	10,5	10,0	-2,9	-22%	-19%	4%
- United Kingdom	500	10,2	9,2	8,1	-2,2	-21%	-15%	8%
- Italy	410	7,5	8,1	6,8	-0,7	-9%	-3%	7%
- France	370	6,9	6,9	5,9	-1,0	-15%	-5%	11%
- Poland	520	8,2	7,5	8,3	0,1	1%	2%	1%
- Spain	290	5,9	7,6	6,3	0,4	7%	26%	18%
- Netherlands	180	10,8	10,9	10,6	-0,2	-2%	9%	12%
Russian Federation	1,750	16,5	11,3	12,2	-4,2	-26%	-28%	-4%
Japan	1,160	9,5	10,1	9,2	-0,4	-4%	0%	4%
Australia	400	16,0	18,6	18,0	1,9	12%	46%	30%
Canada	540	16,2	17,9	15,8	-0,4	-2%	20%	23%
Ukraine	310	14,9	7,2	6,9	-8,0	-54%	-59%	-12%
Non Annex I								
China	8,950	2,2	2,9	6,8	4,6	205%	257%	17%
India	1,840	0,8	1,0	1,5	0,8	100%	180%	40%
South Korea	590	5,9	9,7	12,3	6,4	109%	134%	12%
Indonesia	470	0,9	1,4	1,9	1,1	126%	194%	30%
Brazil	430	1,5	2,0	2,2	0,7	51%	96%	30%
Mexico	430	3,7	3,8	3,8	0,1	4%	39%	35%
Saudi Arabia	430	10,2	12,9	15,6	5,3	52%	159%	70%
Iran	400	3,7	5,2	5,4	1,6	44%	94%	35%
South Africa	380	7,3	6,9	7,6	0,3	4%	42%	36%
Taiwan	270	6,3	10,1	11,1	4,8	77%	118%	23%
Thailand	240	1,6	2,7	3,4	1,8	115%	160%	21%

Source of population data: WPP Rev. 2010 (UNPD, 2010)

* Annex I countries: industrialised countries with annual reporting obligations under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emission targets under the Kyoto Protocol. The USA has signed but not ratified the protocol, and thus the emission target in the protocol for the USA has no legal status.

** EU 15 = 15 EU Member States at the time the Kyoto Protocol was ratified.